

문서번호	안전치수방재과-3075
결재일자	2016.2.1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61호

주무관	안전재난관리팀장	안전치수방재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부구청장
장동구	유동호	신상식	김해성	02/16 김경호
협 조				

**「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」 관련
안 전 대 진 단 추 진 계 획**



안 전 건 설 교 통 국
(안 전 치 수 방 재 과)

「2016년 국가안전대진단」 관련 안전대진단 추진계획

시설물, 안전사각지대, 안전문화 활동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, 위험요인 발굴 및 보완 조치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배경

■ 추진근거 :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(국민안전처 및 서울시)

■ 추진배경

○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의 위협에 대비

- 시설물의 노후화·고층화·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고령자, 저소득층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대비

II 추진개요

■ 진단기간 : 2016. 2. 15 ~ 4. 30(75일간)

■ 진단주체 : 시설관리부서

■ 진단대상(별첨1)

분야	대상	분야	대상
에너지분야	가스충전소(판매소) 주유소(석유판매소) 등	건축물분야	공동주택, 단독주택, 대형건축물, 공공청사
산업안전분야	건설공사장	보건위생분야	종합병원, 일반병원, 장례식장, 대형숙박시설, 대형목욕시설,
취약계층분야	어린이놀이시설,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시설, 아동시설, 장애인시설, 어린이집, 사회복지시설 등		
다중이용시설	산후조리원, 고시원, 전통시장, 판매시설, 백화점, 영화관, 극장, 종교시설, 기타체육시설 등	기타	대형광고물, 행정전산망, 급 경사지, 노후주택, 축대·옹벽, 승강기, 산사태위험지역 등

1. 진단대상

■ 구조분야(Hardware)

- 위험시설 :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별 대상시설 등의 C,D,E 등급 시설, 해빙기 점검시설 등

※ 2016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병행 실시

- 사각지대 : 특정관리대상시설 외 소규모 공연장, 지하상가, 공동구 등
- 기타 위험물 시설 :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

■ 비구조분야(Software)

-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작성 및 활용 여부
- 안전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신고 및 제안 검토
- 안전법령에 따른 교육·훈련계획 수립·이행, 조직·인력 확보 등

2. 진단방법

하드웨어 점검

■ 민관합동점검

- 점검대상 : 위험시설, 사각지대, 표본점검 대상
 - 위험시설 등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,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시설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
- 점검주체 : 부서별 주관
 - 전문가, 공공분야, 단체 직원등으로 구성
- 결과조치 :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
 -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
 - 보수·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시일 (1~3개월)내에 조치
 -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

■ 자체점검

○ 점검대상 :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은 부서별로 자체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

- 관리부서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을 선정하되, 기준 설정 시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
- * 자체점검 안내 : E-mail, Fax,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

- 자체점검 대상은 10%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
- 노후도, 과거 점검결과,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

○ 점검방법 : 부서별 주관

- 자체점검 대상시설(공공+민간)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서별로 작성·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

○ 결과조치 :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

- 즉시 보수·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결과에 대한 보고

※ 추진상황보고 : 자체점검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시스템 입력

소프트웨어 점검

■ 일반국민대상 공모

○ 공모방법

-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문고 웹 및 앱, 또는 e-mail 제안 창구를 개설, 일반국민 대상 제안 실시

○ 추진방안

- 대진단 홍보시 제안모집 집중 홍보, 채택시 포상 실시

■ 전문가 기획제안

○ 추진방안

- 대진단기간 안전관련 전문가 대상 「안전전문가 기획 제안 공모」 실시
- 공모 안내는 국민안전처에서 작성·제공 예정인 공모안내표준(안)을 참고하여 작성
- 제안 접수는 안전치수방재과에서 하고, 자체 처리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이송

■ 안전기준 신설 및 강화

○ 대상

- 안전점검, 행정처분 및 처벌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,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
-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동일유형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분야

○ 점검방법

- 자체 착안 사안 및 안전신고, 전문가 제안,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발굴,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마련
- 각 부서별 점검대상을 선정 민간합동점검으로 철저한 진단 실시, 개선방안 마련

3. 민간분야 책임 강화

■ 엄격한 진단 및 철저한 사후관리

○ 필요성

- 주로 민간분야에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점검 수행, 민간부문의 재난관리 책임 강화 필요

○ 신상필벌

- 형식적 점검을 수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나, 형식적 점검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자에게 책임 부과

○ 행정명령

- 민관합동점검 시 추가진단 또는 긴급 보수·보강 필요 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·보강 명령 시행

4. 정보공유시스템 활용

○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

- 국가재난정보센터(www.safekorea.go.kr)
-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시설 등록 및 대진단 결과, 내용 등 직접 입력

※ 시스템 사용 매뉴얼 별도 발송

○ 관련 부서는 조치계획, 조치결과 등에 따라 관련자료(예산) 입력 관리

- 데이터 입력은 국비, 특교세 산정의 기초자료이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국비나 특교세 배부에서 제외할 예정

5.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

- 국가안전대진단 기간('16.2.15 ~ 4.30) 중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
 - 국민안전처·행정자치부 → 시 및 자치구
 - 시 안전총괄과 및 시설안전과 → 자치구 재난관리부서
 - 시 점검분야별 관리부서 → 자치구 점검분야별 관리 부서

IV 행정사항

- '각 시설관리 부서 → 안전치수방재과' 보고서 제출
 - 추진상황 주간 보고서 제출 : 대진단기간 매주 금요일
 - 추진상황 중간보고서 제출 : '16.3.14(월)
 -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: '16.5.3(화)

- ◆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
 - * 국가재난정보시스템(www.safekorea.go.kr)

- 붙임 1. 분야별 안전대진단 관리대상
2. 자체점검표

별첨1

분야별 안전대진단 관리대상

번호	점검분야	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	소관부서
1	시설물	상하수도, 국립공원	-
2		하천(하구둑, 수문 및 통문, 제방, 보, 배수펌프장)	안전치수 방재과
3		댐, 교량(도로, 철도), 터널(도로, 철도), 육교, 지하차도 ※ 시특법 대상시설	-
4		교량(도로, 철도), 터널(도로, 철도), 육교, 지하차도 ※ 특정관리대상 시설	도로과
5		항만(무역항, 연안항, 국가어항, 지방어항)	-
6		어린이 놀이시설	가정복지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
7		저수지(C등급)	-
8		어린이 보호구역	교통행정과
9		광산시설	-
10		임도시설	-
11	건축물	복합사용 건축물(시특법대상), 공동주택(시특법 대상)	건축과 주택과
12		복합사용 건축물(특정관리대상시설 11층이상, 연면적 5,000㎡이상), 공동주택(특정관리대상 시설 아파트, 연립주택), 중단된 공사장	건축과 주택과
13		중앙부처 공공청사	-
14		자치단체 공공청사 ※ 특정관리대상시설	총무과 자치행정과
15		판매시설(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*) * 백화점, 대형마트, 전문점, 쇼핑센터 등	일자리경제과
16		판매시설(농수산물 도매시장 등)	-
17		전통시장	일자리경제과
18		공연장, 집회장, 관람·전시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, 공공도서관, 위락시설(무도장, 무도학원, 카지노영업소)	문화체육과 건축과 교육지원과
19		의료시설(종합병원, 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등), 숙박시설(일반숙 박시설, 관광숙박시설), 대형목욕탕,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, 노 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), 산후조리원, 장례식장	보건의료과 보건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건강관리과
20		청소년수련시설	가정복지과
21		교육연구시설(유치원, 초·중·고·대학 등, 도서관)	-
22		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	유원시설

23		삭도·궤도, 운수시설(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)	교통행정과
24		여객선, 여객터미널	-
25		유도선 및 도선, 수상레저시설, 래프팅보트시설	-
26		대형광고물	도시디자인과
27	해빙기 점검시설	절토사면, 옹벽(시특법대상)	주택과 건축과
28		산사태위험지역	공원녹지과
29		급경사지(옹벽포함), 굴착공사장	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
30	사각지대	낚시어선	-
31		쪽방촌, 고시원, 지하도상가, 건축·토목 중단된 공사장(특정관리대상시설)	건축과 주택과
32		연구실	-
33		학교실험실	-
34		공동구	-
35		캠핑장, 집라인, 번지점프장, 소규모공연장	문화체육과
36		요양병원	복지정책과
37		자전거도로	교통행정과
38		비상대피시설	자치행정과
39	위험물 유해화학물	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(위험물 안전관리법), 해양오염시설 등	환경과 일자리경제과
40		유해화학물시설(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),	환경과
41		가스시설(도시가스 제조시설, 고압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) 액화석유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	환경과
42		원전시설	-
43		석유비축·정유시설	-
44		화약류 저장소	-
45	기타	전기시설(발전시설, 배전시설, 변전소, 전력거래소 등)	-
46		대형공사장(토목, 건축)	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
47		식품제조가공업, 의료제품 제조업	-
48		어린이 집단급식	-
49		학교급식	-
50		문화재시설	문화체육과

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(가스분야)

점검사항		점검결과		조치사항	
		○, ×	내용(위치, 상태)		
①	용 기	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옥외설치(※ LP가스 해당사항)			
		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우회거리 유지(※ LP가스 해당사항)			
②	가 스 계량 기	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 우회거리 유지			
		전기계량기(개폐기) 60cm, 굴뚝·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30cm, 미절연 전선과 15cm이상 유지			
③	배 관	호스는 3m 이내로서 “T”형 연결 금지, 접속부위는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히 연결			
		배관의 부식 및 파손 여부			
④	가 스 누출 여부	각 접속부 및 배관 또는 호스의 누출여부			
⑤	보일러 및 온수 기 급 배 기	온수기 및 보일러는 목욕탕 등 환기불량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			
		배기통 끝은 배기가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방해 받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			
⑥	가 스 용 품	관리 및 작동상태가 이상이 없는 구조			
		검사품 및 KS표시 여부			
⑦	안 전 장 치	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 설치 및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위치 및 수량이 적정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			

점검일자 : . . . 점검자 : (서명)

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(소방분야)

점검사항	점검결과		조치사항
	○, ×	내용(위치, 상태)	
○ 소화기 또는 자동화산소화기 1.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 여부 2. 안전핀, 호스,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3.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계이지 지시침 확인			
○ 자동화재 탐지설비 4. 수신반 상태확인(정상 작동 여부) 5.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			
○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6. 옥내소화전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확인 7.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, 손상 상태 8.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9.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10. 압력계이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11. 경보장치 스위치의 상태 12. 헤드의 누수·변형·손상·장애 여부 13.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			
○ 피난유도등(유도등) 14. 주위에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 존재 여부 15.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			
○ 비상조명등 16.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 상태 17.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상태 확인			
○ 완강기 18. 기판체 및 로프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함부 및 이음매 상태 19. 충분한 탈출개구부의 존재 여부 20. 배치상태 양호 여부			
○ 방화문(방화셔터) 21. 화재시 감자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22.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(방해물) 여부 23. 방화문 도어클로저 정상작동 여부			
○ 피난탈출구(비상구) 24.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25.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 동행 방해 물품장치 여부			

점검일자 : 점검자 : (서명)

